◉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 기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

○ 붙임 자료에 따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 근거 및 목적

□ 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

□ 목적

○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나. 평가대상 시·도지사

○ 평가대상 연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시·도지사

○ 다만, 평가대상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 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

3.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1) 시범운행지구 개요
 가) 명칭 및 위치·범위
 나) 운영계획서에 제시한 계획서비스 개요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가)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다) 제도적·재정적 지원 실적
 라) 안전관리 실적
 마) 갈등관리 실적
3)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 소통 및 도로 안전성 변화
 나)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가) 서비스별 이용수요(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
 나)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다) 시범운행지구 참여 기관의 기업 성장도

5)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가)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다) 재정지원계획 목표

○ 성과보고서는 평가대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작성함. 다만, 전년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 연도 12월까지임

4. 운영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나.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음

다. 평가방법

○ 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함

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함
2)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

○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과 유상운송사업 운영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해당 평가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

○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목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
3)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

○ 감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5점

*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인 경우로 한함

2) 1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발생시 -2점

○ 가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유상운송사업 운영시 +5점

마. 종합 평가

○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A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2) B :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
3) C :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
4) D :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
5) E :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

바. 평가기간

○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평가시 협조

○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단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6.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종합 평가 결과가 “A”인 시범운행지구는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E”인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별표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기준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	Ⅰ-1.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Ⅰ-1-1. 서비스 운영기간	○ 서비스 운영기간의 우수성
		Ⅰ-1-2. 월평균 운행거리	○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 ○ 목표 설정의 우수성 (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
		Ⅰ-1-3. 유상운송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	○ 유상운송용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 비율의 우수성
		Ⅰ-1-4.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	○ 운영계획목표 달성의 우수성 -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인원 또는 건) 달성율 ○ 목표 설정의 우수성 (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
	Ⅰ-2.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Ⅰ-2-1. 기반시설 구축률	○ 운영계획목표 대비 시설 구축 수준의 우수성 ○ 목표 설정의 우수성 (운영계획서 상 목표 미설정시) ※ 기반시설 예시 :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 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용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V2X 단말기, 관제센터, 기타 시스템 등
		Ⅰ-2-2. 기반시설 관리 노력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 우수성 ※ 시스템 예시 : 관제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스템(앱), 인프라 연계 시스템(신호현시 및 보행자정보 제공시스템 등) ○ 시스템 외 기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의 질적 우수성
	Ⅰ-3.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적	Ⅰ-3-1. 제도적 지원 실적	○ 관련 조례 및 기타 지원 제도 마련, 또는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실적의 질적 우수성
		Ⅰ-3-2. 재정지원 실적	○ 운영계획(목표) 기준 예산 집행 수준의 우수성 ○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Ⅰ-4. 안전관리 실적	Ⅰ-4-1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개선 노력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예방 및 개선 노력의 적정성 - 사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지구, 사업자의 예방 노력 - 사고 및 법규 위반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발생한 경우)
		Ⅰ-4-2 안전확보 및 향상 노력	○ 운영 계획서의 안전관리 운영 적정성 -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시행 여부 - 탑승객 비상상황 교육 시행 여부
		Ⅰ-4-3 돌발상황 저감노력	○ 돌발상황(긴급제어상황) 개선 노력 - 급감속·급조향 및 운행장애 등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적정성
	Ⅰ-5. 갈등관리 실적	Ⅰ-5-1. 갈등관리 노력	○ 이해관계자(주민, 기존 산업, 관계기관 등)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실적의 우수성 ○ 갈등 발생시 대응 과정의 적정성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Ⅱ-1. 지구 지정 효과	Ⅱ-1-1. 도로 소통상황 변화	○ 지구 내 도로구간별 일반/자율차 통행량 및 통행속도 정보의 구체성

따른 효과 부문			○ 자율주행통행정도에 따른 도로교통 소통 변화 진단 결과의 합리성
		Ⅱ-1-2. 도로안전성 변화	○ 지구 내 도로구간별 사고 및 돌발상황 발생 정보의 구체성 ○ 자율주행통행수준에 따른 도로안전성 변화 진단 결과의 합리성
	Ⅱ-2. 규제특례 효과†	**[유무상운송]** Ⅱ-2-1.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경쟁서비스* 산출 방법의 적합성 및 경쟁서비스 운영현황자료의 구체성 ○ 경쟁서비스*와 해당서비스의 월이용실적(인원 또는 건) 자료 및 증빙자료의 구체성 및 비교 분석 결과의 합리성 (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 추이 비교 분석의 구체성)
		[비운송] Ⅱ-2-1. 사회적 영향/효과	○ 제시한 영향/효과의 적정성(해당 서비스의 특성 반영 고려) ○ 분석 방법의 구체성 및 분석 결과의 합리성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	Ⅲ-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 효과	Ⅲ-1-1. 도입·확산 정도	○ 서비스별 월이용자수 추이 자료 제출 여부 (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거리 추이 자료 제출 여부)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 참여 기업의 자율차 기술 향상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 누적 주행거리, 제어권 전환 및 고장 감소율 - 예정되지 않은 차선변경이나 경로이탈 발생률
			○ 자율주행 운행환경 개선 노력 관련 자료 제출 여부 - 지자체/업체의 자율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Ⅲ-2-2. 참여기업의 기업성장도	○ 참여 기업의 기업 성장도 관련 자료 제출 여부 - 참여 기업의 주요역할, 종사자수, 사업매출액, 투자유치액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	Ⅳ-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Ⅳ-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	○ 서비스별 월평균 운행거리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서비스별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인원 혹은 건) 목표 설정의 적정성 ○ 미운영서비스에 대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Ⅳ-2.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Ⅳ-2-1.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 적정성	○ 기반시설별 구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
	Ⅳ-3. 재정지원계획 목표	Ⅳ-3.-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지속성 ○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 경쟁서비스 : (노선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및 택시, (구역형 여객운송사업) 택시, (화물운송사업) 택배사업 혹은 경쟁 사업, (기타 비운송사업) 기존 사업 혹은 경쟁 사업

† 해당 지표는 서비스별로 평가한 후, 평균하여 점수 산출. 단, 1) 운송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며, 2) 비운송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기타 효과에 대해 평가함.

주)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 부문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배점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 부문	60	Ⅰ-1.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20	Ⅰ-1-1. 서비스 운영기간	5
				Ⅰ-1-2. 월평균 운행거리	6
				Ⅰ-1-3. 유상운송 대수 상한 대비 허가 대수	4
				Ⅰ-1-4. 운행거리 당 이용실적*	5
		Ⅰ-2.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10	Ⅰ-2-1. 기반시설 구축률	4
				Ⅰ-2-2. 기반시설 관리 노력	6
		Ⅰ-3.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적	8	Ⅰ-3-1. 제도적 지원 실적	4
				Ⅰ-3-2. 재정지원 실적	4
		Ⅰ-4. 안전관리 실적	15	Ⅰ-4-1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및 개선 노력	5
				Ⅰ-4-2 안전확보 및 향상 노력	6
				Ⅰ-4-3 돌발상황 저감노력	4
		Ⅰ-5. 갈등관리 실적	7	Ⅰ-5-1. 갈등 관리 노력	7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	20	Ⅱ-1. 지구 지정 효과	12	Ⅱ-1-1. 도로 소통상황 변화	6
				Ⅱ-1-2. 도로안전성 변화	6
		Ⅱ-2. 규제특례 효과	8	Ⅱ-2-1.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부문	10	Ⅲ-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 효과	4	Ⅲ-1-1. 도입확산 정도	4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 효과	6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4
				Ⅲ-2-2. 참여기관의 기업성장도	2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평가 부문	10	Ⅳ-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5	Ⅳ-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 적정성	5
		Ⅳ-2.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3	Ⅳ-2-1.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 적정성	3
		Ⅳ-3. 재정지원계획 목표	2	Ⅳ-3-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 적정성	2

주)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